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206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 D은 2023. 12. 2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,18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

판사 양우석

별지